

# 보육교직원 관리

1.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일반절차 .....	159
2. 보육교직원 임면(채용, 해임 등) .....	160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	165
4. 보육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	166
5. 보육교직원 결격 사유 확인 .....	167
6.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	172
7.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 기준 .....	175
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	185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	188
10.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	191
11.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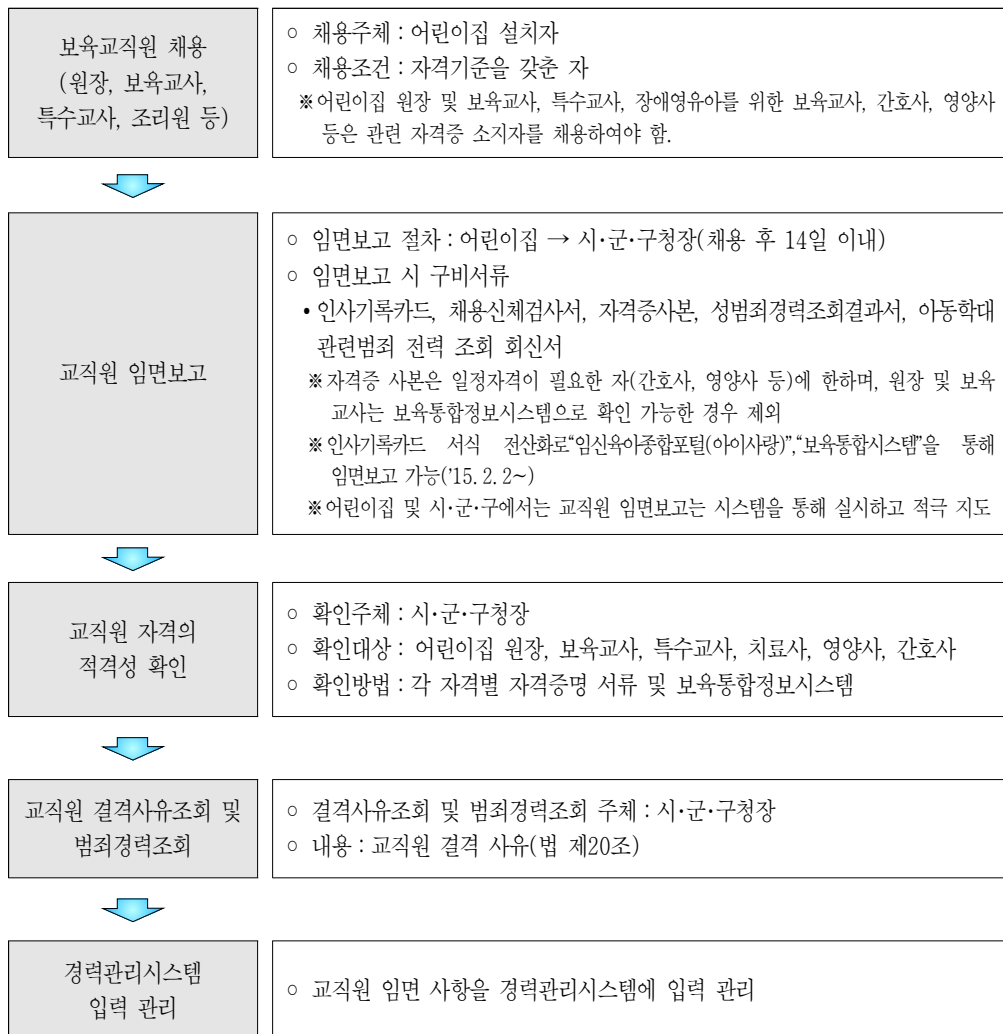


# 보육교직원 관리

1

##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일반절차

### ☑ 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



## 가. 보육교직원 임면권자

## 1) 어린이집 원장

- 국·공립 어린이집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서 교직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
    - ※ 단,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교직원의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민간 어린이집 등 : 어린이집 설치자

○ 부모협동어린이집 :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대표자

## 2)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

- 원장의 제청으로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설치자(교직원 임면권을 위임 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

## 나. 보육교직원 채용

## 1) 채용조건

## (가) 어린이집 원장

-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다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 발급 조건부로 채용 가능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하여야 하므로 상근이 어려운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

## (나) 보육교사

-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다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봄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중전 전문대학 등의 졸업예정자에 대한 보육교사 채용 특례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채용 가능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간호사(면허),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조리원 중 1인 이상은 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함(식품위생법)

## 2) 채용방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교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음
- 교직원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관할행정 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 근로계약은 가능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 3) 채용 시 구비서류

-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

(가) 공통서류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 단기간 근로자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 ※ 보육실습생, 특별활동강사, 노인일자리파견 파견자도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제출
  -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 검사서로 인정 가능.
  -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진단 대상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는 전염성 질환(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검사결과 포함하여 제출

(나) 원장 및 보육교사

○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사본

- 국가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구비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치료사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치료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라) 간호사·영양사 등 자격을 요하는 교직원 : 자격증(면허증) 사본

4) 교직원 결원 시 채용시기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 교직원을 채용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

○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기(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포함)전에, 또는 채용 중(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인 경우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 하고 확인

- 이용방법 : 공인인증서 로그인,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기관)장이 신청서 작성 및 회보서 확인(시설정보 사전 등록 → 취업예정자 등 동의 → 기관(시설)장 신청·발급)

- ※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보 관련 경찰청 온라인 서비스 활용 안내(보육사업기획과-309, '15. 1. 12)
- ※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보육실습생 및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에 대해서도 필히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도록 하며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 ※ 성범죄 경력조회 위반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부과대상임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자는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

○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임면보고 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상·하반기, 부분 또는 전수조사 가능) 이상 점검·확인 실시하고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및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8~9)로 문의

## 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

- 임면권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기(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포함) 전에, 또는 채용 중(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인 경우에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 하고 확인
  -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 및 원장의 경우에도 적용
  - ※ 범죄전력 조회요청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 조회대상자는“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와 동일(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자는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
  - ※ 구체적인 사항은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02-558-1391)에 문의

※ '16. 3월부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확인이 정기적으로 가능하니 시도, 시군구에서는 점검시 활용, 자세한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 매뉴얼(보육교직원 범죄경력조회 기능 사용 매뉴얼)」 참조

## 마. 보육교직원 퇴직 등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 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
- 퇴직에 대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바. 보육교직원 임면관련 자료 관리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필수서류 제출 및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등” 서식 전산화 추진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 실시 및 보관. 다만, 불가피시 서류로 직접 제출하되 관련 서류보관·비치
  - '15. 2. 2 부터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류 직접 제출 및 기존 관리대장 비치 방법을 병행(어린이집에서 기존 방법과 시스템을 통한 제출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가능)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의 임면 사항과 관련된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서식 III-5>
  - 자격을 요하는 교직원 : 자격증 사본
  - 기타 교직원 임면과 관련된 서류

※ 보육실습생에 대한 지침 안내

- 보육실습생으로부터 어린이집에서는 다음의 자료를 수령하여 보관
  -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보육실습생 신상카드<서식 IV-4>



## 3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 가. 일반원칙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 병가·연수·휴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함
    -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직종,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를 하여야 함(대체교사, 보조교사,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운전원, 단기간 근로자 등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임면 보고)
    - ※ 어린이집 대표자가 실제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를 하여야 함
    -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3호의2에 따라“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2012.2.5. 시행)

## 나.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서류

- 보고방법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시 원칙적으로 보육통합시스템에 첨부서류와 함께 등록
  - ※ 시·군·구에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임면보고 서식(서식 Ⅲ-6에 따라 시·군·구청에 제출)
- 첨부서류
  - 인사기록카드 사본(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시·군·구에 직접 임면보고 하는 경우)
  - 자격을 요하는 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단, 원장 및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제외)
  -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가. 일반원칙

-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 조건이 필요한 원장,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의 적격성 확인

## 나. 확인방법

## 1) 원장 및 보육교사

-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격의 적격성 확인
- 특히, 정원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일반어린이집 원장’ 또는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무자격자가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의 경우 자격증빙서류 포함)을 통하여 자격의 적격성 확인

## 다. 자격증 발급 및 임면관리

- 원장 자격증은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등으로 나누어지는 바, 40인 미만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도 별도로 발급
- 따라서, 정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이상의 원장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이어야 함

## 5

## 보육교직원 결격 사유 확인

## 가. 일반원칙

-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가 제2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구: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

## 나. 교직원 결격사유(법 제16조 및 제20조)

-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12697호, 2014.5.28.) 안내
    - ① 제16조제8호는 2013년 8월 13일 이후 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됨
    - ② 제16조제1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
    - ③ 제16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과 제4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13321호, 2015.5.18.) 안내

- 제16조의 개정규정(제5호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호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에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후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한국보육진흥원, 시·군·구를 통하여 자격정지 및 취소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정지자 및 자격취소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다. 결격사유조회(구: 신원조회) 업무처리 요령

※ 결격사유조회는 행정자치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중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며, 결격사유 조회와 별개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 범죄경력조회 실시 필요

### 1) 결격사유조회 대상자

#### ▣ 결격사유조회 대상자

-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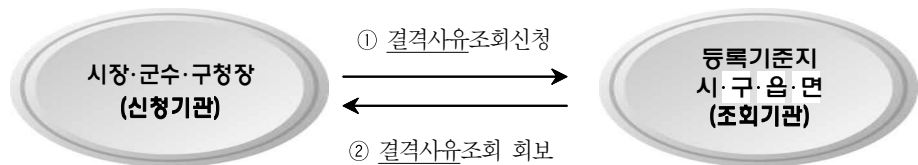
2) 결격사유 조회 방법 및 처리 절차

(가) 용어의 정의

- 신청기관 :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 조회기관 :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시장, 구청장, 읍·면장(출장소장 포함)
- 결격사유조회 :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조회기관에게 신원기록 내용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
- 결격사유조회 회보 : 신원조회에 따라 조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원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

(나) 결격사유조회 방법 및 세부 처리절차

-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식 III-7>에 의하여 즉시 조회기관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결격사유조회를 신청하고, 신원조회 <서식 IV-1> 및 회보대장 <서식 IV-2>을 기록·비치·관리
- 조회방법은 FAX, 행정전산망, 우편의 방법으로 조회 함
- 조회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서식 IV-3>를 별도로 편철·관리 및 보관
- 결격사유조회·회보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육교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결격사유조회 비치서류 등

- ①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
- ② 결격사유조회 요청서 <서식 III-7>
- ③ 결격사유조회 요청대장 <서식 IV-1>
- ④ 결격사유조회요청 회보대장 <서식 IV-2>

4) 결격사유조회 및 처리 시 유의사항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 상의 결격사유조회 대상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조회기관에 결격사유조회 요청서를 송부

- 결격사유조회 요청서를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송부(FAX 등)한 후 접수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
- 조회기관으로부터 회보가 된 경우 반드시 관련대장에 기록·관리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문서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통지하여 어린이집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

#### 5) 기타사항

- 결격사유조회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라. 범죄경력 조회 업무처리 요령

○ '16. 3월부터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매뉴얼(보육교직원 범죄경력조회 기능 사용 매뉴얼)」 참고

#### 1)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영유아보육법 제16조)

-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범죄경력조회 방법 및 처리 절차

##### (가) 용어의 정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범죄경력조회 :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 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
- 범죄경력자료 :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命) 등의 선고 또는 처분

(나) 법적 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다) 범죄경력조회 업무 절차

-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경력 조회기관인 관할 경찰서장에게 공문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신청

※ 범죄경력조회 신청 및 회보시 반드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인한 결격사유자 등이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라) 유의사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0조)

- 직무상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 이를 사용하여서도 안 됨.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유의

## 가. 일반원칙

-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경력관리 시스템(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임면 사항을 입력·관리
  - ※ 보육교사에 한하여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경력 인정(시간단위로 합산하여 경력인정, 2011.7.1.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만 합산, 2011.7.1. 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 ※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
- 교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의 사항도 경력 관리 시스템에 입력·관리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영유아보육을 위해 채용된 대체교사(임시교사) 및 시간제 보육교사에 대한 임면사항도 경력관리 시스템에 입력·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의 대여 등의 방법으로 허위 등록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고된 경력에 대하여 삭제 조치

## 나.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

- 보육교직원(또는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부터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경력(재직)증명서 <서식 IV-4>를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경우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장도 가능)
  - 발급대상 :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그 밖의 직원 등 보육교직원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된 자
    - ※ 어린이집 대표자(설치자)는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발급대상이 아님. 다만, 대표자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 방법 : 경력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24 (<http://www.minwon.go.kr>)에서도 발급 가능

## 다.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작성·보관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프로그램상의 교직원 관리 대장을 비치·관리



## 라.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이전 경력의 처리 요령

### 1) 일반원칙

- 보육교직원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보육교직원이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 및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경력을 인정하고,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
  - ※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청장이 관리 (법 제20조)하게 되었고, 2005. 7. 31.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 2)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및 입증 서류

#### (가) 2001. 3. 31까지 근무한 경력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에 의하여 경력 인정
- 다만,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이 별도로 보관·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 받고자 하는 자가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경력 인정

#### (나) 2001. 4. 1~2005. 7. 30까지 근무한 경력

-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경력 인정

#### (다) 2005. 7. 31 이후 근무한 경력

- 2005. 7. 31.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관리하므로 교직원 임면보고 시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3)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구분	관련 증명서류
어린이집 원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배상보험, 자동차보험, 소득세원천징수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인건비, 보육료, 차량운영비, 간식비, 교재교구비 등)관련서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지도·점검관련서류, 교직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육교사 등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납입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부,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 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그 밖에 교직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근무경력을 인정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한 근거 서류를 보관

## 7

##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 기준

##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1) 목적

- 2017년도 보육교직원의 보수 책정 시 호봉 산정 기준 제시

## 2) 적용범위

- 국고보조어린이집(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책정을 위한 호봉 산정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원장
-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 조리원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이외의 자(사무원, 운전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국고보조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미지원어린이집)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봉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인건비 책정 시 호봉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3) 용어의 정의

- “호봉”이란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준을 말함
- “호봉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호봉인정 근무경력”이란 호봉 산정 시 인정되는 어린이집 등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원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의 자격 승급을 위해 필요한 경력(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나.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

## 1) 시행권자

-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은 당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호봉인정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할 경우 경력관리시스템에 호봉을 입력·관리

※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이관('05. 7.31부터) 받아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관리

## 2) 호봉인정 근무경력

-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호봉인정 근무경력은 아래 경력에 한하되, 다. 보육 교직원 호봉 인정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새마을유아원, 탁아시설에 근무한 경력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대체교사 경력 포함)
- 2005년 1월 30일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해당 현역병 의무 복무기간

## 3)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증명

- 초임호봉획정 또는 호봉의 재획정 시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호봉획정권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
  -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시장·군수·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은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 교육청·유치원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군 의무 복무기간 : 군경력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 4) 초임호봉의 획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호봉인정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을 산정

## 5) 호봉의 재획정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직원이 재직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름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

#### 6) 호봉승급

-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함
  - ※ 보육교사에 한하여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호봉 인정(시간단위로 합산하여 경력인정, 2011.7.1.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만 합산, 2011.7.1. 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 ※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 인정
  - ※ 출산휴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급기준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
-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2회 시행

##### 예시

Q : 2007년 3월 1일에 호봉 인정 근무경력이 2년 10개월인 갑이 A어린이집에 임용될 경우 호봉 및 다음 호봉 승급일은?

A : '07. 3. 1. : 3호봉으로 책정, '07. 7. 1. : 4호봉으로 호봉 승급

-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날 시행되는 바, 갑의 경우 '07. 7. 1. 현재 호봉인정 근무경력이 3년 2개월이므로 4호봉으로 승급 조치

### 다.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 기준

#### 1) 1999.12.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 인정범위

##### (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 동일시설(새마을유아원 및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동일시설이라 함은 「甲」 새마을유아원에서 「甲」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며, 동일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시설로 봄
  -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근무로 봄
  - ※ 동일시설의 계속근무라 함은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 예시

甲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하던 金○○ 시설장이 甲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설장으로 계속 근무한 경력은 모두 호봉으로 인정(○○새마을유아원 ⇒ ○○어린이집)

※ 보육교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보육교사로 종사하던 자가 당해 시설의 시설장으로 직종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음

(나) 경력을 제한적으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1) 동일시설 근무경력의 호봉인정 등

- 1982. 2. 22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이전 아동복지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아동복지 법시행령 부칙 제5조)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며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1982. 2. 22 이후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자격인정 이전기간은 근무경력의 50%를 인정
  -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 초급호봉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
- 양성교육 이수전 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 경력의 50%를 인정하되, 양성교육 이수 후부터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91. 8. 8)이전에 무자격이었던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동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50%를 인정하고, 유자격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

(2) 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간의 전보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92. 1. 1 이후 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을 관내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 발령한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 경력 인정 개선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인 1992. 1. 1 이전 원장을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 발령한 경우 이전 계속 근무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

**예시** '91년말 현재 공립 A시설에서 5호봉으로 받고 있는 교직원(보육교사 → 보육교사, 원장 → 원장)가 '92. 1. 1 전보발령으로 관내 공립 B시설로 옮긴 경우 6호봉으로 인정

- '96. 1. 1 이후 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이 관내 다른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
  - '96. 1. 1 이후 동일 법인내에서 어린이집간 전보된 경우
- (3) '96년말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교직원이 '97. 1. 1 이후 타 지역(전국 단위)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으로 근무지를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경우 '96년말 현재 교직원 경력인정 2) 인정범위 “가)”와 “나)”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산정

- 예** ① '96년말 현재 4호봉인 교직원(1월 1일 호봉승급자)이 '97. 1월에 다른 시설로 옮긴 경우 5호봉으로 확정
- ② '96년말 현재 4호봉인 교직원(1월 1일 호봉승급자)이 공백기간(1개월 이상)을 가지다가 '97. 3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계속근무가 아니므로 1호봉으로 확정

**▣** 경력 인정 개선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1996년 12월말 이전에 민간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한 교직원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

**예시** 6년말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4년간 계속 근무했던 교직원이 1997년 1월 1일부터 국공립 및 법인 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인정

2) 2000. 1. 1. 이후 경력인정제도 개선

- 1999년도까지는 교직원 경력인정 인정범위의 기준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 1. 1 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예** '99년말 현재 A시설에서 10호봉을 받고있는 교직원(1월 1일 호봉승급자)이 2000년 2월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후 4월에 B시설에 채용된 경우 11호봉으로 확정

3) 교직원 직종 변경

- (가) 동일어린이집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로 인하여 원장 자격 기준에 해당되어 동일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예** '03년말 현재 10호봉(1월1일자 호봉)으로 근무중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동일시설의 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04.1.1현재 11호봉으로 확정 가능

- (나) 동일어린이집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교직원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어린이집에서 타직종에 근무하던 중 자격이 있는 직종으로 변경 근무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예**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가 어린이집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중 보육교사로 변경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을 100%를 인정

- (다) 동일어린이집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 근무 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의 50%를 호봉으로 인정, 단 어린이집을 옮길 경우 호봉인정 안됨(보육65210-235, '02.11.4)

- (라) 보육교사로 계속 근무하던 자가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직종 변경시 원장 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 근무경력 100%를 호봉으로 인정('03. 1. 1시행)

**예** 2002년말 현재 2급 보육교사로 A어린이집에서 10년간 계속 근무하다가 2003.1.1 B어린이집으로 옮길 경우 원장 자격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근무 경력 100% 인정

-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1991. 1. 14. 이후)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

교사로 종사하는 경우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정  
4)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구 종일제유치원을 포함)

(가) 관련근거(법 제50조)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함)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나) 유치원(방과후 과정 운영)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의 호봉인정 방법

-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범위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로 근무한 경력 : 100% 인정
    - 교원 이외의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 : 50% 인정
- 호봉인정을 위한 근무경력 입증 방법
  -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명서 제출
    -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증빙서류에 대한 법적 서식은 없으며, 해당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 서류, 유치원장 직인의 방과후 과정 유치원 운영확인서류 및 공문 등)면 가능
  -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 : 해당 유치원의 기관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5) 대체교사 및 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가) 대상자 : 보수교육, 출산휴가, 시간연장형 등 대체교사(임시교사 포함)로 투입된 보육교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포함)

(나) 인정범위 : 주당 30시간 이상을 종사한 보육교사

- ※ 2011.7.1. 이후 보육교사에 한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근무기간으로 인정.  
2011.7.1. 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다) 인정시기 : 2005. 1. 30 이후 대체교사 또는 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



## (라) 인정 방법

- 어린이집 원장은 대체교사(임시교사) 임면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면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 2005. 1. 30. 이후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 보고되어 대체교사(임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의 호봉 확정 시 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인정
-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임면보고되어 대체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의 호봉 인정 근무경력으로 인정

## (마) 기타사항

- 대체교사 또는 임시교사로 관할 시·군·구청(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임면보고 되어 어린이집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자격승급(2급 → 1급)을 위한 ‘보육업무 경력’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으로 인정

## 6) 보육교직원 휴직 시 호봉인정 범위

- 출산휴가(3개월 이내) 또는 육아휴직(1년 이내) 기간은 호봉확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 연도별 종사자 호봉인정과정 ■

연도	호봉인정사항
199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제 : '89.12.31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동기관이 탁아시설로 전환하여 종사자가 계속 탁아시설에 근무할 것</li> <li>○ 호봉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의 근무경력을 사회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하되 보수는 자격취득시 까지 초급호봉을 기준으로 지급</li> <li>※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새마을유아원은 '90. 9. 18까지 탁아시설로의 전환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전환시설은 아동복지법령에 의한 소정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함</li> </ul> </li> </ul>
199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도 호봉 인정사항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무자격자는 영유아보육법부칙제6조에 의하여 '94. 1. 13이전에 자격을 취득하여야함 (향후 무자격 원장 및 보육사에 대하여 양성교육 실시 예정)</li> </ul> </li> <li>○ 동종유사시설의 보육시설로 전환(영유아보육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 보육시설로 인정</li> <li>-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유아시설 및 시범탁아소 → 보육시설로 인정</li> <li>-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li> <li>- 미인가탁아시설 →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li> <li>※ 지침상에는 전환시기를 '92. 1. 13까지로 연장함</li> </ul> </li> <li>○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부칙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 3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상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함</li> </ul> </li> </ul>
199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 호봉(경력)인정을 별도의 제목으로 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자격자, 무자격자, 양성교육이수자로 구별하여 호봉(경력)인정을 설명함</li> </ul> </li> <li>○ 호봉(경력)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자격자 :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경력에 따른 근속호봉 인정</li> <li>- 무자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982. 2. 22이전 임용된 자로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 계속적 근무하고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여 보수는 지급하되, 양성교육을 통하여 추후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li> </ul> </li> <li>② 1982. 2. 22이후 임용된 자로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 계속적 근무하고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인정시까지 초급호봉기준으로 보수지급하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근무경력의 50% 인정</li> </ul> </li> </ul> </li> <li>- 양성교육 이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양성교육이수전기간(동일시설 계속 근무 전제)은 근무경력 5할 인정</li> <li>② 양성교육이수이후부터는 근무경력 10할 인정</li> </ul> </li> </ul> </li> <li>-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정으로 종전의 무자격자가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시행규칙제정 ('91.8.8)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 계속 근무 전제)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하고 동시행규칙 제정 이후의 근무경력 10할 인정</li> </ul>

연도	호봉인정사항
199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2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선사항 추가</li> <li>- 동일시설 계속근무일경우만 경력 인정(어린이집 → 새마을유아원 → 보육시설)</li> </ul>
199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3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종사자 직종변경 사항을 추가</li> <li>○ 종사자 직종변경시 경력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시설에서 시설장 자격을 가져 시설장이 되는 경우 근무 기간 10할 인정 ex) 보육교사1급 자격을 가진 자가 근무 중 동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li> <li>- 종사자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시설에서 타직종으로 변경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ex)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가 A보육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보육교사로 변경 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 10할 인정</li> </ul> </li> </ul>
19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4년도 지침내용과 동일</li> <li>- 다만, 보육교사종사자 중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관리 사항 추가</li> </ul>
199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5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유사경력 인정 사항을 추가</li> <li>○ 유사경력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구청장이 '92.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발령한 경우</li> <li>- '96.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li> <li>- 동일 법인내에서 보육시설간 전보된 경우</li> </ul> </li> </ul>
1997년 ~ 19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5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li> <li>○ 경력인정제도 개선(근무지변경시 호봉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년 현재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인가받은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97. 1. 1이후 타지역(전국)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근무지를 옮길 경우 '96년말까지 인정받은 경력을 인정 ex)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97. 1. 1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인정 ex)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공백기간을 가진 후 '97. 3. 1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계속 근무가 아니므로 다른 시설에서 1호봉으로 확정</li> <li>※ 1997년 지침에는 민간보육시설 사례가 없었으나, 2000년 지침에는 “민간 보육시설에서 4년간 근무했던 종사자가 '97. 1. 1부터 국공립 및 법인시설로 옮길 경우 1호봉으로 확정(민간보육시설근무경력은 '97년부터 호봉으로 인정)”하도록하여 해석상 혼란 발생</li> </ul> </li> </ul>
2000년 ~ 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li> <li>○ 경력인정제도 개선(계속근무와 관계없이 호봉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 1. 1부터는 2000. 1. 1 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ex) '99년 말 현재 A시설에서 10호봉을 받고 있는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2000. 2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후 4월에 B시설에 채용된 경우 11호봉으로 인정</li> </ul> </li> </ul>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li> <li>○ 경력인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간 이동에 따른 호봉 불인정분을 소급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발령(시설장)</li> </ul> </li> </ul> </li> </ul>

연도	호봉인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li> <li>- 보육종사자 직종변경에 따른 호봉 인정</li> <li>• 보육시설 종사자가 다른 보육시설장으로 직종변경시 자격취득이후 근무 경력 인정</li> <li>- 계속근무의 융통성 부여</li> <li>•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이내의 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li> <li>-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이외의 자의 호봉 인정</li> <li>• 동일시설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 근무중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근무경력의 5할을 호봉으로 인정</li> </ul>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증명서 발급시 첨부서류 등</li> <li>- 위 1. 종사자 관리 다. 5) 참조</li> </ul>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li> <li>- 보육시설의 근무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보육시설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li> <li>- 유치원(종일제)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자에 대하여는 유치원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li> </ul>
경력인정 범위확대 과정 (요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동일시설 + 동일직종 + 계속근무(1992년)</li> <li>② 동일시설 타직종 변경근무 경력인정 : 간호사 → 보육교사(1994년)</li> <li>③ 유사경력인정 - 시설간 이동 제한 완화 : 공립, 법인(1996년)</li> <li>④ 타지역소재 보육시설 근무지 이동시 경력인정(1997년)</li> <li>⑤ 계속근무 제한 폐지(2000년)</li> <li>⑥ 유치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격을 상호인정(2005년도)</li> </ol>

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가. 일반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자격기준	비 고
원 장 <sup>1)</sup>	전 어린이집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 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정원기준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세 미만 ⇒ 영아 3인당 1인</li> <li>•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li> <li>•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li> <li>•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li> <li>•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li> <li>※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li> <li>• 취학아동 ⇒ 20인당 1인</li> <li>• 장애아 3인당 1인</li> <li>※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li> </ul>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현원기준
간호사 <sup>2)</sup>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영양사 <sup>3)</sup>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조리원 <sup>4)</sup>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방과후 제외)

- 주 1)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여야함  
 2) 간호조무사도 가능함  
 3)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영양사 채용시 현원을 기준으로 함  
 4)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영유아 현원은 방과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조리원의 경우에는 취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8시간 미만 근무도 가능함. 다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하여야 함

▣ 조리원 채용기준(예시) ▣

조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영유아 수	40~80인	81~160인	161~240인	241~320인	320인 이상

- ※ 3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2005. 1.29이전에 한해 설치 가능하였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 운영하고 조리사 자격을 갖춘 조리원을 배치  
 5) 원장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며, 원장은 정원을 기준으로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교직원 이외에 어린이집의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부담으로 보육교사 등의 교직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1인만 둘 수 있음

## 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 1) 근거법령(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직원 배치 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2.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3. 동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2) 특례인정 범위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원 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례인정범위	4명 이내	7명 이내	9명 이내	19명 이내	24명 이내

※ 특례가 인정된 경우 반별 초과보육(어린이집 반편성원칙)은 불가능함

### 3) 특례인정 조건

-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 4) 특례인정 세부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 대한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을 수립
  - 계획은 특례인정 범위 및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계획을 확정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 시·도지사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승인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 특례 인정 범위 및 지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
  - ※ 농어촌특례를 인정받던 지역이 행정구역 변경(읍 → 동으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특례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특례인정 제외에 대한 유예
- 반 편성 등이 확정된 년도 중 특례인정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 지방보육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결정
  - 유예대상 :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 유예기간 : 반 편성(3월) 이후 특례사항이 변동될 경우 최대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정, 반 편성 이전(1월~2월)에 특례사항이 변동될 경우 당해연도 2월말까지로 한정

#### 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기준

##### 1) 일반원칙

-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2) 특례인정

###### (가) 특례인정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 집으로서 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육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할 수 있음

###### (나) 세부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채용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 대해  
나. 4)특례인정 세부절차와 같이 원장·보육교사 겸용을 허용

###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중 원장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연속, 휴일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하여야 함
  - 다만,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보육교사의 원장 업무 대행은 7일(연속, 휴일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7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 또는 대체 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함
    - ※ 불가피한 사유 : 휴가, 병가, 연수, 보수교육 참여 등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나. 교직원의 겸임제한

#### 1)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겸임 제한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다만,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임할 수 있고,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원장이 간호사와 영양사 모두를 겸임 할 수 없음
  - ※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21~39인 이하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2) 다른 시설의 겸임 제한

## (가) 일반기준

-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전임’이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란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 보육교직원의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
    -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은 “B”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없음
-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

## (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음
  -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음
  -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등을 겸임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아니함
  - ※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학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교수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 종전 법(2005.1.30. 개정 전)에서는 종교시설 등에서 부설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종교시설의 장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있었으나, 2005. 1. 30. 개정 법에서는 겸임 규정을 삭제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한다고 규정
  - 따라서, 종교시설의 장 및 종교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없음
    - ※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2005. 1. 29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06. 2월말까지 개정 법에 의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함
- 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준용
- 보육교직원의 최저임금 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준용
- 기타 교직원의 복무, 근로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 개별법을 준용토록 함

※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등 활용률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출산전 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을 진행 중  
-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참고

## 10

##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 가. 대상자 및 처분권자

- 자격정지 대상자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 처분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나.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 1) 일반원칙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되,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 제1호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인 경우에는 2년)
2)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나.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46조 제2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다.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 제3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법 제46조 제4호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 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법 제46조 제5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 다의 경우 예시

- 2006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0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09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09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10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11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이 되어 1차 자격정지 1개월, 2012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2차 자격정지 3개월, 2013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3차 자격정지 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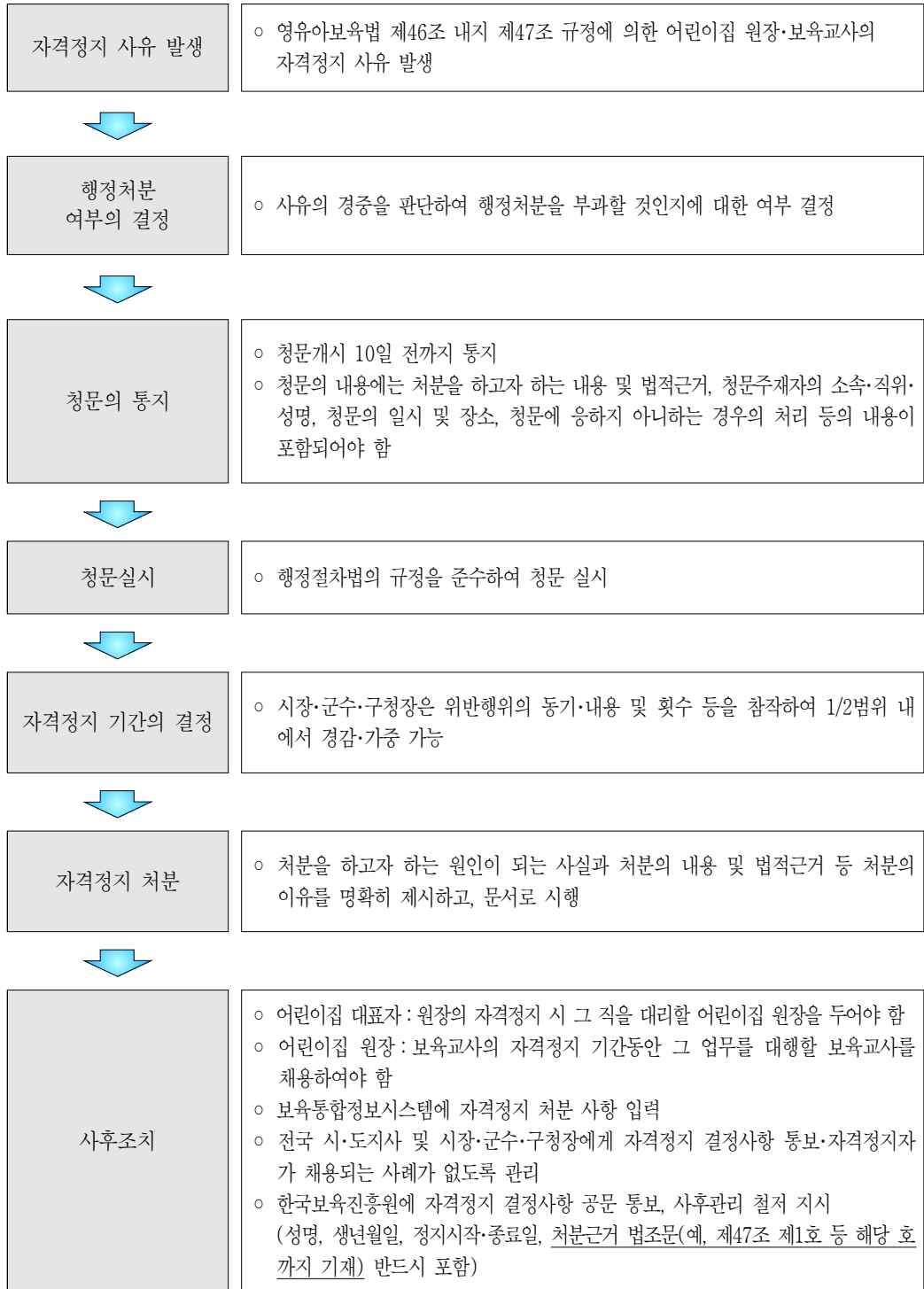
## 3)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47조 제1호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인 경우에는 2년)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2)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3)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2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 다. 처분절차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청문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하여야 함
  - ※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한 해당 자격만 정지, 다만 법 20조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중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음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어린이집 원장을 두어야 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함

## 라. 자격정지 절차도



## 가. 대상자 및 처분권자

- 대상자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 처분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 나. 자격취소 사유(법 제48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둘 다 취득한 경우에는 두 자격 모두 취소(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1310/08. 8. 22)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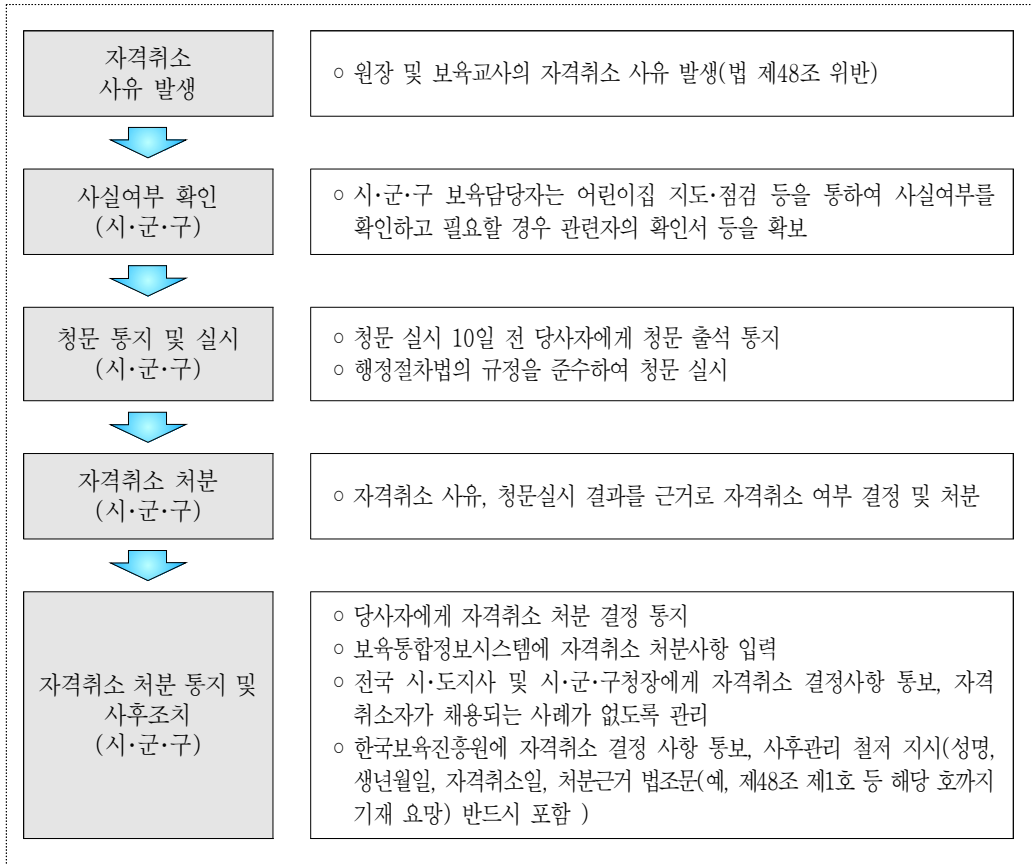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으폐하기 위하여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 자격취소 일반절차



라.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절차

1) 자격증 대여 사실의 판단기준

○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특정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명의의 통장 원본, 도장 등을 대여하는 경우도 명의 대여로 간주

-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 2) 대여 사실 발생여부 확인

- 자격증 대여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시·군·구청의 보육담당자는 자격대여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 ※ 확인서류

- ① 대여자의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관련 서류
- ② 보육교직원 임면사항 보고 공문 사본 및 대여 받은 어린이집의 인가증 사본
- ③ 임용 및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교직원 관리대장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 ④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의 확인서 사본 또는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⑤ 대여자의 거주지 및 연락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사본
- ⑥ 기타 자격증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청문의 실시 및 자격취소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 자격 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자의 자격 취소 결정
  - ※ 청문 실시 전 한국보육진흥원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정확한 자격 정보 확인
  - ※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자격만 취소

## 4) 처분의 통지 및 사후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취소 결정 시 대상자에게 자격취소 처분 사실을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취소 처분 사항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국 시·도에 자격취소자 명단을 통보하여 자격취소자가 어린이집에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요청
-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에 반드시 공문으로 통보하여 자격취소자의 이력을 관리하도록 요청

###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 받지 못함
  - 다만,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 받지 못하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년 이내에서 재교부 받지 못함.